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12. 9. 11.

제안자 : 행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서울시에서 통보된 자치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표준(안)과 우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 우리구 조례에 조례의 목적, 위원회 구성 및 임기 관련 미흡한 점이 있어 동 조례를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수정 주요내용

- 가. 안 제1조 중 “형성을 위해”를 “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”로 함.
- 나. 안 제16조제4항제1호를 “주민대표”로 함.
- 다. 안 제16조제4항제2호 중 “주민 대표, 전문가”를 “전문가”로 함.
- 라. 안 제17조제2항 중 “위원과 위촉직 구의원”을 “위원”으로 한다. 로 함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중 “형성을 위해”를 “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”로 한다.

안 제1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주민대표

안 제16조제4항제2호 중 “주민 대표, 전문가”를 “전문가”로 한다.

안 제17조제2항 중 “위원과 위촉직 구의원”을 “위원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<u>형성을 위해</u>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6조(구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<u>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</u></p> <p>2. <u>주민 대표, 전문가 및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</u>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16조(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</p> <p>1. <u>주민대표</u></p> <p>2. <u>전문가</u> ----- ----- --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임기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구의원</u>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17조(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위원</u> ----- -----</p>